

# 경종대 신임옥사 이후 부사공신(扶社功臣) 녹훈(錄勳)과 회맹제(會盟祭) 시행

---

신진혜

건양대학교 충남지역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사 전공

saintessjean@korea.ac.kr

---

## I. 머리말

II. 부사공신(扶社功臣) 녹훈(錄勳)과정과 단훈(單勳) 시행

III. 회맹제(會盟祭) 실행과 왕세제의 참제(參祭)

## IV. 맷음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002).

## I . 머리말

중국 춘추시대의 회맹(會盟)은 제후들의 화합과 결맹을 도모하고 위엄을 보이기 위해 시행되었다.<sup>1</sup> 『주례(周禮)』에 대략적인 회맹제(會盟祭) 절차가 남아 있으며, 당대(唐代)에도 토번(吐蕃)과 회맹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다.<sup>2</sup> 조선의 회맹은 녹훈공신(錄勳功臣)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공신회맹제(功臣會盟祭)는 국가와 왕실을 위협했던 세력을 토역하고 왕실에 충의를 맹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태조가 개성 왕륜동에서 개국공신 자손·동생·사위들과 함께 최초로 시행하였고, 태종 11년(1411) 이후로는 경복궁 신무문 북쪽에서 실행되었는데<sup>3</sup>, 경복궁 북쪽에 조성되었던 회맹단(會盟壇)은 북단(北壇)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회맹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록된 전례는 아니었지만 조선 초엽부터 회맹단에서 왕실에 대한 협보(挾輔)를 맹세해온 전통이 누적되면서 견고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회맹제에서 국왕과 공신들은 맹세의 의미를 담아 맹서문(盟誓文)을 읽고 입가에 피를 바르는 삽혈(歃血) 의식을 수행하였다. 삽혈은 국왕, 새로운 공신, 역대의 공신과 그 적장자손(嫡長子孫)까지 함께하였는데, 이것은 공신과 공신가문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의식이었다. 역대조 공신 가문까지 대대로 상하신기(上下神祇)에 고하고 삽혈하는 의식에 참여시키는 것은 맹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였다. 조선전기에 정비된 회맹제의 장소와 의식절차는 조선후기에 이르

1 『春秋左傳』, 昭公三年. “令諸侯三歲而聘 五歲而朝 有事而會 不協而盟。”

2 『周禮』「秋官司寇」司盟; 『新唐書』卷231, 「列傳」第141(下), 吐蕃(下)

3 『太祖實錄』卷2, 太祖 元年 9月 28日 丙午; 신명호, 「조선시대 공신회맹제」,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집문당, 2003b), 454쪽; 박용만, 「조선시대 공신회맹제」, 『특별 전 도록: 조선의 공신』(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86-287쪽.

기까지 전승되었는데, 이렇듯 개국부터 이어진 회맹의 상징과 전통은 조선 고유의 회맹제가 가지는 위상을 정립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공신의 성격과 지위, 정치적 동향은 물론<sup>4</sup>, 세조 13년에 시행되었던 회맹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신회맹제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sup>5</sup> 그리고 회맹 서문과 공신 녹훈 교서의 성격<sup>6</sup>, 충훈부에서 공신자손을 파악하고 관리했던 사례에 대한 연구<sup>7</sup>, 임진왜란 당시 전공을 세워 선무공신으로 책훈된 권응수(權應銖, 1546-1608)가 하사받은 태평회맹도(太平會盟圖)에 대한 미술사적 의미를 정리한 연구<sup>8</sup>, 숙종조의 이십공신회맹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성과가 제시된 바 있다.<sup>9</sup>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된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공신의 성격과 이에 대한 기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4 조선 공신의 성격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천식, 「朝鮮開國功臣에 對한  
一考察-冊封過程과 待遇를 中心으로」, 『전북사학』 제1집(1977); 박천식, 「戊辰回軍功  
臣의 冊封顛末과 그 性格」, 『전북사학』 제3집(1979); 정두희, 「朝鮮初期 三功臣研究:  
그 社會의 背景과 政治的 役割을 中心으로」, 『역사학보』 제75·76집(1977); 정두희, 「朝  
鮮 世祖-成宗朝의 功臣研究」, 『진단학보』 제51집(1981); 전종섭, 「조선 성종조 좌리  
공신에 관한 일고찰」, 『대구사학』 제18집(1980); 정궁식, 「조선전기 공신지위의  
승계」, 『법학』 제43(2)집(2002); 김윤주, 「조선초 공신 책봉과 개국·정사·좌명 공신  
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학보』 제35집(2009); 최승희, 「朝鮮後期 社會身分史研究」  
(지식산업사,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전 도록: 조선의 공신』(한국학중앙연  
구원, 2012).

5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가람기획, 2003a), 315-326쪽; 신명호(2003b), 위의 책,  
451-469쪽; 박용만(2012), 앞의 책; 박성호,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의 옛 맹약을  
지키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36-47쪽.

6 정승모, 「會盟誓文: 조선 태종 4년(1404) 11월 功臣會盟祭 때 작성한 誓文의 板刻本」,  
『역사민속학』 제3집(1993); 박성호,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의 意의 검토」,  
『전북사학』 제36집(2010); 노인환, 「조선시대 功臣敎書 研究」, 『古文書研究』 제39집  
(2011); 강순애, 「조선 태종조 佐命功臣의 책봉 교서와 관련 문서의 기록 연구」,  
『書誌學研究』 제80집(2019).

7 김명화, 「조선후기 忠勤府의 功臣子孫 파악과 收單: 『忠勤府贍錄』과 功臣子孫世系單子  
를 中心으로」, 『古文書研究』 제56집(2020).

8 신윤호, 「太平會盟圖의 역사적 배경」, 『미술자료』 제80집(2014).

9 박성호,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의 옛 맹약을 지키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지 윤곽을 드러내었고, 회맹제의 실체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왕실에서 시행되었던 의례는 정치행위의 일환으로, 절차가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신회맹제의 일반적 양상을 확인했으나, 공신이 정해지고 회맹제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까지 면밀히 접근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국왕·왕세제와 소론 세력 내부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종 3년(1723) 부사공신 회맹제의 시행양상을 주목할 만하다. 부사공신은 1등, 2등 공신이 없는 상태에서 목호룡 한 사람을 3등 공신으로 녹훈한 사례로, 영조 즉위 후 삭훈(削勳)되어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대의 공신과 차이가 있었다. 경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론은 연잉군을 왕세제로 삼을 것을 청하고 이어 왕세제가 대리청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소론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론세력이 삼수(三手)의 방법으로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목호룡(陸虎龍)의 고변이 발생하여 노론은 대대적인 화를 입었다. 이러한 신임옥사와 관련하여 시행되었던 부사공신 회맹제는 독특한 의미를 내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론 측에서 지지했던 왕세제와 소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경종이 회맹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었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 규장각 소장자료인 『회맹제등록(會盟祭膳錄)』(奎12872)에 기재된 경종대 회맹제 관련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회맹제의 시행 상황을 복원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국의 상황이 어떻게 회맹제를 통해 추상적 형태로 구현되는지 확인하고, 왕세제였던 영조가 소론이 장악한 정국에서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II . 부사공신(扶社功臣) 녹훈(錄勳)과정과 단훈(單勳) 시행

국가와 왕실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은 공훈을 상징하는 훈호(勳號)를 받고 공신으로 녹훈되었다. 국왕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을 원훈(元勳)으로 정하면, 원훈과 대신들이 모여 사건을 수습하는 데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을 공신 녹훈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공로를 감정하는 감훈(勘勳)을 통해 1등부터 3등으로 공신 등급을 나누어 정하여 감훈단자(勘勳單子)에 기록하였다. 국왕은 감훈단자와 함께 공신들이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공적 조서를 올리게 하였고 이를 토대로 녹훈을 허락하였다. 공신으로 정해지고 등급이 구별되는 과정은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공신이 결정되면 공신의 명칭인 훈호를 정하였고, 이어 공신회맹제를 시행하고 공신교서를 내려주었다.<sup>10</sup> 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만 대체로 이러한 과정으로 공신 녹훈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경종대 부사공신의 녹훈과 회맹제 시행은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경종 원년(1721)의 신축옥사와 경종 2년(1722)의 임인옥사를 계기로 녹훈되었던 부사공신은 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빚어졌다. 노론은 자신들이 지지했던 경종의 이복동생인 연잉군(延礪君)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일을 서둘렀고, 인원왕후(仁元王后)의 도움으로 왕세제를 책봉한 이후에는 왕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청하게 되면서 경종을 지지하고 있었던 소론 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경종 원년 12월에 소론은 김일경(金一鏡,

<sup>10</sup> 勳封을 통해 공신이 된 사람들은 종묘와 문묘의 配享功臣과는 구별되었다. 공신의 녹훈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신명호(2003a), 위의 책, 315-326쪽. 공신이 공식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특권에 대한 정리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정긍식(2002), 위의 논문, 264-268쪽.

1662-1724)을 소두(疏頭)로 노론의 왕세제 대리청정 주장에 대해 노론 4대신 [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고<sup>11</sup>, 이를 계기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구성되었다. 그러던 중 남인계 서얼 목호룡(1684-1724)의 고변이 발생하였다. 노론이 숙종 말엽부터 왕세자였던 경종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칼로 시해하거나[大急手] 독약으로 시해하거나[小急手] 혹은 모함으로 폐출하는[平地手] 삼수의 방법을 모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8개월에 걸쳐 옥사가 진행되었고 노론 4대신을 포함한 노론 대다수가 화를 입었다.<sup>12</sup>

경종 2년 9월에 역적을 토벌하였다는 사실을 종묘에 고묘하였고<sup>13</sup>, 공신을 녹훈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역대로 훈봉(勳封)되었던 공신들과는 달리 신임옥사에 관해서는 역모를 고변한 목호룡 외에는 공신으로 거론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석항(崔錫恒, 1654-1724)은 목호룡 한 사람만을 녹훈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전에는 국왕이 먼저 원훈을 정하고 원훈이 녹훈하기에 마땅한 사람을 정하면 국왕이 이를 계하하였지만, 지금은 상변한 목호룡 외에 달리 녹훈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목호룡만 녹훈하고 초자(超資)하여 부직(付職)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sup>14</sup> 이에 대해 중종 2년(1507)에 이과(李顥)의 모반을 평정하고 노영손(盧永孫, ?-?) 한 사람만을 녹훈했던 전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아뢰었다.<sup>15</sup>

11 『景宗實錄』 卷5, 景宗 元年 12月 6日 壬戌。

12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오갑균, 「景宗朝에 있어서의 老少 對立」, 『淸州教育大學校論文集』 제8집(1972); 오갑균, 「辛壬士禍에 대하여」, 『淸州教育大學校論文集』 제9집(1973); 정만조,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 『진단학보』 제56집(1983); 이희환, 「경종대의 신축환국과 임인옥사」, 『전북사학』 제15집(1992).

13 『景宗實錄』 卷9, 景宗 2年 9月 21日 癸卯。

14 『景宗實錄』 卷8, 景宗 2年 6月 30日 癸未; 卷10, 景宗 2年 10月 5日 丁巳。

15 하지만 최석항이 선례로 제시한 중종 2년의 定難功臣은 처음부터 노영손 한 사람만을 공신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었다. 중종 2년에는 1등 推誠保社祐世定難功臣 5명, 2등 推誠保社定難功臣 5명, 3등 推誠定難功臣 11명으로 총 21명을 녹훈하였다. 하지

목호룡 한 사람만을 녹훈하는 ‘단훈(單勳)’을 시행하자는 최석항의 의견에 대해 대신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김일경(金一鏡)은 삼수(三手)의 역(逆)을 막은 대사에 대해 단훈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략하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선조 때 정여립의 난을 다스릴 당시에는 안옥(按獄)에 참여한 대신들까지 모두 녹훈한 사례가 있었으니 녹훈할 만한 대신들을 더 조사하여 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배하(韓配夏, 1650-1722)는 김일경의 의견과는 달리 구차하게 사람을 충당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고, 최석항 역시 인조 때에 안국(按鞫)에 참여한 대신은 녹훈하지 않는 정식(定式)이 있었음을 들어 반대하였다. 최석항은 과거 유효립(柳孝立, 1579-1628)의 옥사 당시 허적(許禡, 1563-1640)이 홍서봉(洪瑞鳳, 1572-1645)에게 말하여 역모를 발각된 까닭에 허적은 1등으로 삼고, 홍서봉은 2등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모두 역모를 발각한 공로 때문이지 안옥에 참여해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구분했고, 만일 구차하게 공신을 충당한다면 조정의 수치가 될 것임을 경계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경은 함원부원군 어유귀(魚有龜, 1675-1740)를 녹훈대상으로 삼자는 뜻을 내비쳤다. 국옥에 참여하였을 때 이삼석(李三錫)의 초사(招辭)를 들었는데, 목호룡이 어유귀에게 나라가 멸망할 화가 임박하니 나라의 변을 방비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을 때, 어유귀가 ‘그대의 말이 진실로 옳다’며 동의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국옥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다면 목호룡 외에도 녹훈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

만 臺諫이 모역을 고변한 노영손 이외에 推官이나 승지까지 공신으로 녹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려 결국 노영손만을 남기고 모두 개정하였다.『中宗實錄』卷4, 中宗 2年 9月 6日 丙午; 卷27, 中宗 12年 3月 30日 乙巳) 때문에 이후 최석항이 제시한 중종 2년의 사례는 참고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장하였다. 하지만 김일경의 주장에 대해 최석항은 선대에도 국옥에 참여한 대신을 녹훈한 경우는 없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목호룡만 녹훈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한배하 역시 구차하게 사람을 충당하여 녹훈하는 것에 반대하였다.<sup>16</sup>

김일경이 원훈으로 내세웠던 어유귀는 경종의 양자를 들여 후사를 도모하고 왕세제를 제거하려 했던 경중비 선의왕후(宣懿王后) 어씨의 부친이었고, 선의왕후는 왕세제의 계승을 부정하는 급소(急少) 계열의 김일경과 같은 입장이었다.<sup>17</sup> 반면 준소(峻少) 계열에 속했던 최석항·조태억(1675-1728) 등은 노론에 대한 처벌에는 동의했지만 왕세제의 정통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입장이었기에 급소 계열인 김일경과는 차이가 있었다.<sup>18</sup>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어유귀를 원훈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아직 공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종은 대제학 조태억에게 훈호(勳號)를 찬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조태억은 명에 곧바로 응하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녹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조선에서는 개국 이래 공신을 3등 혹은 4등으로 정하였고 한 사람을 단훈하는 경우는 없었던 사실을

16 『承政院日記』 546冊, 景宗 2年 10月 5日 丁巳; 『景宗實錄』 卷10, 景宗 2年 10月 5日 丁巳. 『경종실록』 기사에서 찬자는 김일경이 선대 안옥에 참여했던 대신들을 거론하면서 변란을 방지했던 國舅 어유귀의 녹훈을 제안했던 것은 결국 김일경 자신이 노론 사대신을 四叱으로 논핵하는 상소를 올렸던 疏頭이면서 국옥에 참여하기도 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녹훈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17 이에 관해서는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신구문화사, 2020), 61-62쪽.

18 신임육사의 진행과정에서 소론 계열은 노론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장했던 김일경·이진유 등의 급소와 서명균·윤순 등의 완소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중도적 입장을 가졌던 준소 계열인 조태구·최석항·이광좌·이태좌·조태억 등은 노론의 처벌에는 동의하였지만 왕세제의 계승 정통성을 부정하지는 않았고, 급소의 배척으로부터 완소를 보호하려는 입장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근호,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민속원, 2016), 41-42쪽.

언급했다. 앞서 최석항이 중종대에 노영손이 단록(單錄)되었던 사례를 들어 단훈을 주장했지만 노영손도 처음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녹훈되었는데 후대에 모두 삽훈되고 노영손만 남게 된 것이니 지금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조태억은 목호룡을 단독으로 녹훈할 경우 훈호를 짓는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전례에 감훈(勘勳)할 때에는 8-12자(字)의 긴 훈호[長號]를 찬출(撰出)하였는데, 호를 사용할 때 1등 공신은 모든 글자를 전부 사용하였고, 2등 공신은 1등에 비해 2자를 덜어서 사용했으며, 3등 공신은 1등에 비해 4자를 덜어서 사용하였다. 그런데 ‘역모를 상변한 자’는 3등 공신으로 삼아왔던 전례에 따라 목호룡이 3등으로 녹훈된다면 1등과 2등 없이 3등만 녹훈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만약 3등만 단훈하게 되면 1등만 사용할 수 있는 10자의 긴 훈호는 필요가 없어지니 6자나 4자로 지어야 하는데, 개국한 아래로 이런 규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조태억은 의정부와 충훈부에서 상세하게 결정해야 훈호를 찬정할 수 있을 것임을 상소하였다.<sup>19</sup>

공신도 훈호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공신 회맹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 녹훈도감에서 경종 2년 10월부터 이전의 등록을 바탕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sup>20</sup> 회맹제는 조선 건국 이후 역대로 훈록된 공신들의 적장 자손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대규모 의식이었기 때문에 미리 외방 각도 각읍에 거주하는 공신 적장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도 감사(各道監司)와 양도 유수(兩都留守)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알리도록 조치해야 했다.<sup>21</sup> 그리

19 『景宗實錄』 卷10, 景宗 2年 10月 14日 丙寅。

20 『會盟祭贍錄』(奎12872), 壬寅 10月 29日。

21 『承政院日記』 546冊, 景宗 2年 10月 23日 乙亥. 신공신 및 구공신의 직계 아들이나 손자가 회맹제에 참석하였는데, 공신 가문별로 두 사람 이상이 참석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만 참석해야하는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 점차 날씨가 추워져서 국왕이 친립했다가 건강이 상할 염려가 있어서 추위지기 전인 11월 초순에 시행하기로 하고<sup>22</sup> 길일(吉日)을 11월 초9일로 정하였다.<sup>23</sup> 하지만 11월에 이르러 회맹제의 예행연습[肄儀]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훈호는커녕 공신조차 확정되지 못하였다.

회맹제 예행연습 하루 전날에 녹훈도감에서는 상황이 급하니 속히 승정원에 품지하여 하루 안에 훈호를 정해줄 것을 청하였다.<sup>24</sup> 이때 김일경은 다시금 어유귀의 공로를 들어 1등 공신으로 삼고 목호룡을 1등으로 삼는 것은 정지할 것을 아뢰었는데, 경종 역시 동의하였다. 김일경은 원훈을 중심으로 녹훈할 만한 사람을 찾아 공로의 고하(高下)에 따라 3등으로 나눈다면 녹훈이 법도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 주장하였다.<sup>25</sup> 이렇듯 급히 원훈을 결정하였는데 이것도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회맹제 예행연습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회맹제도 임박했기에 부득이하게 시일을 미루게 되었다.<sup>26</sup>

김일경은 어유귀를 명초(命招)하여 감훈할 것을 청하여 윤허를 얻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1등 공신으로 결정되었던 어유귀가 녹훈을 사양하면서부터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어유귀는 원훈(元勳)을 사양하는 일로 상소하고 편비(褊裨)를 통해 밀부(密符)를 바치면서 자신의 뜻을 보였다.<sup>27</sup> 어유귀는 상소를 올려 김일경이 무언(誣言)으로 자신을 원훈록에 1등 공신으로 넣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하였다. 김일경은 목호룡이 어유귀에게 변란의 조짐을 고변했다고 하였는데 어유귀는 목호룡의 실상을 본적이

---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김명화(2020), 위의 논문, 87~91쪽.

22 『承政院日記』 546冊, 景宗 2年 10月 26日 戊寅.

23 『承政院日記』 546冊, 景宗 2年 10月 29日 辛巳.

24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4日 乙酉.

25 『景宗實錄』 卷10, 景宗 2年 11月 4日 乙酉; 『景宗修正實錄』 卷3, 景宗 2年 11月 4日 乙酉.

26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4日 乙酉.

27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5日 丙戌.

없음에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꾸며낸 허언을 바탕으로 억지 훈명을 더하였다면서 강력히 녹훈을 거부하였다. 경종은 어유귀의 녹훈은 재덕(才德) 때문이라며 사양하지 말라고 했지만<sup>28</sup>, 어유귀의 거절은 형식적 인 것이 아니었다. 어유귀는 자신의 본직과 겹직을 모두 파직해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원훈을 사양하였고<sup>29</sup>, 수십 차례 장부(將符)를 환납하기 도 하였다.<sup>30</sup>

결국 경종은 어유귀가 겹양하여 원훈을 사양하니 부득이 체개(遞改)한다고 비답하였다.<sup>31</sup> 급소 세력과 같은 입장이었음에도 어유귀가 이처럼 원훈이 되는 일을 극도로 거부했던 이유는 그가 실제로는 노론에 속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 비록 어유귀가 정계에서 노론으로써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sup>32</sup>, 경종 원년(1721) 11월에 노론 사대신이 세제 대리청 정 주장과 관련되어 파면되자 이들을 신구(伸救)하기도 하였다.<sup>33</sup> 때문에 노론 세력이 대대적으로 사사된 신임옥사에 대한 원훈공신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유귀의 훈록 거절로 여전히 공신을 결정짓지 못하였지만 참여자들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회맹제의 길일은 미리 정하였다. 경종 3년(1723) 1월에 이르러 일관(日官)을 시켜 1월 그믐 전으로 길일을 추택하기로 하였 고<sup>34</sup>, 1월 26일로 길일을 추택하였다. 하지만 청에서 칙사가 입경하는 시기

28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5日 丙戌; 『景宗實錄』 卷10, 景宗 2年 11月 11日 壬辰.

29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17日 戊戌.

30 『景宗實錄』 卷10, 景宗 2年 11月 17日 戊戌; 景宗 2年 11月 18日 己亥.

31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17日 戊戌.

32 李建昌, 『黨議通略』 景宗朝.

33 『景宗實錄』 卷5, 景宗 元年 12月 7日 癸亥. 다만 『景宗實錄』의 史臣은 어유귀가 노론을 위해 청을 올렸다고는 해도 그것이 본심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34 『承政院日記』 549冊, 景宗 3年 1月 3日 癸未.

와 상치되었기 때문에 다시 날짜를 미루게 되었다.<sup>35</sup>

경종 3년 1월 최석항은 이삼(李森, 1677-1735)과 신익하(申翊夏, ?-1723) 두 포장(捕將)을 녹훈 대상으로 거론하였다. 이들은 삼수[大急手·小急手·平地手] 가운데 궐로 들어가 겹으로 경종을 시해한다는 대급수와 상궁에게 은(銀)을 주어 약을 타게 해서 시해한다는 소급수에 해당하는 증거를 적발한 바 있다. 이삼은 장물(贓物)을 수색할 당시 칼과 은화를 발견했고, 신익하는 삼수 가운데 독약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흥순택(洪舜澤)의 종 업봉(業奉)을 체포하여 약을 판 사람의 성명과 약의 형색(刑色)에 대해 밝혀내었다. 영의정 조태구(趙泰鳩, 1660-1723)는 이삼과 신익하를 감훈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지만, 판의금 심단(沈檀, 1645-1730)은 두 포장을 녹훈하는 것 역시 단출하니 대신을 녹훈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논의 끝에 최석항의 의견대로 1등 이삼, 2등 신익하, 3등 목호룡으로 결정되었다.<sup>36</sup>

녹훈도감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못한 훈호를 속히 정해줄 것을 청하였고, 예문제학 이조(李肇, 1666-1726)로 하여금 훈호를 선정하도록 하였다.<sup>37</sup> 훈호는 ‘輸忠奮義竭誠效力扶社’로 결정되었다.<sup>38</sup> 1등부터 3등까지의 공신이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10자의 훈호를 찬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삼과 신익하는 어유귀와 마찬가지로 소를 올려 녹훈을 사양하였다.<sup>39</sup> 이삼을 누차 패초(牌招)하였지만 이삼은 응하지 않았는데<sup>40</sup>, 이러한 이삼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sup>41</sup>, 최석항은 사양하는 이삼

35 『承政院日記』 549冊, 景宗 3年 1月 16日 丙申; 景宗 3年 1月 17日 丁酉.

36 『景宗修正實錄』 卷4, 景宗 3年 1月 25日 乙巳.

37 『承政院日記』 549冊, 景宗 3年 1月 27日 丁未.

38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1月 27日 丁未; 『景宗修正實錄』 卷4, 景宗 3年 1月 25日 乙巳.

39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2月 3日 癸丑; 景宗 3年 2月 5日 乙卯.

40 『承政院日記』 550冊, 景宗 3年 2月 2日 壬子; 景宗 3年 2月 3日 癸丑.

41 『承政院日記』 550冊, 景宗 3年 2月 3日 癸丑; 景宗 3年 2月 5日 乙卯; 景宗 3年 2月

과 신익하에게 엄하게 책유(責諭)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sup>42</sup>

이런 상황에서 정언 김중희(金重熙)는 원훈을 다시 정할 것을 아뢰었다. 구례(舊例)에 따르면 녹훈할 때 국왕이 먼저 원훈을 정하고 원훈으로 하여금 서차(序次)를 정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공신은 경종이 친히 정한 것이 없고 신하들의 진달(陳達)에 근거하여 이삼과 신익하를 공신으로 정했기 때문에 전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구차하게 작은 공로로 녹훈하여 국가의 성전(盛典)을 초라하게 미봉하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삼과 신익하를 녹훈하라는 명은 거두고 경종이 직접 원훈을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sup>43</sup>

경종은 따르지 않다가 승지 오명항(吳命恒, 1673-1728)이 이삼과 신익하는 죄인을 잡아온 군관일 뿐인데 녹훈하는 것은 전례에 위배되니 감록(勘錄)을 다시 정할 것을 진달하고서야 명을 환수하였다.<sup>44</sup> 결국 녹훈을 다시 정하고 회맹제를 미루는 방향으로 이어졌다.<sup>45</sup> 회맹제 이의는 2월 11일, 회맹제는 2월 15일로 정해져 있었지만 대신(臺臣)들이 1·2등 공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회맹제는 다시 미루어서 날짜를 정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sup>46</sup>

예조판서 이사상(李師尙, 1656-1725)은 경종이 직접 하교하여 감훈할 것을 청하였는데, 경종은 이를 최석항에게 하순하였다. 최석항은 처음부터 원훈으로 합당한 사람이 없었고 그 중에 공로가 드러났던 사람이 이삼과 신익하였는데 대신들이 사훈하게 하였으니, 중종대의 노영손의 예에 따라

---

7日 丁巳.

42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2月 5日 乙卯.

43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2月 8日 戊午.

44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2月 12日 壬戌; 『承政院日記』 550冊, 景宗 3年 2月 12日 壬戌.

45 『承政院日記』 550冊, 景宗 3年 2月 10日 庚申.

46 『承政院日記』 550冊, 景宗 3年 2月 10日 庚申; 景宗 3年 2月 11日 辛酉.

단훈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하였다. 조태구도 단훈으로 감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행사직 심단은 목호룡이 처음에는 역모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원훈으로 삼는 것은 사체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는데, 죄석항은 역모를 상변(上變)한 사람이 동맹(同盟)할 수 없다면 녹훈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경종은 목호룡을 공신으로 삼아 단훈으로 감정할 것을 명하였다. 반복되는 녹훈 거부와 회맹제의 퇴정(退定)은 도리어 국체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졌기에 목호룡 한명을 단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sup>47</sup> 이에 따라 회맹제 시행 날짜는 3월 12일로 다시 정해졌다.<sup>48</sup> 경종대의 부사공신은 목호룡 이외의 공신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맹제는 경종 2년 11월 초9일로 정해졌다가 이후 세 차례나 연기되었는데, 사신 입경 시기와 맞물리는 문제로 미뤄진 사례 한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공신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sup>49</sup>

### III. 회맹제(會盟祭) 실행과 왕세제의 참제(參祭)

회맹제는 공신을 녹훈하고 사건을 마무리짓는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의식으로, 비록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국초

47 『景宗實錄』卷11, 景宗 3年 2月 18日 戊辰; 『承政院日記』551冊, 景宗 3年 2月 18日 戊辰.

48 『承政院日記』551冊, 景宗 3年 2月 21日 辛未; 『會盟祭贍錄』(奎12872), 癸卯 2月 21日.

49 이러한 경향은 인조 24년(1646)의 寧國功臣 회맹이 훈호 지정, 회맹제의 시행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두서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조 24년 9월 3일에 거행되었던 寧國功臣 회맹제의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신명호(2003b), 앞의 책, 집문당, 453~454쪽.

부터 누적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제천고유(祭天告由)’의 절차를 갖추고, 국왕이 친히 신구공신(新舊功臣)의 자손들과 더불어 입가에 피를 바르며 맹세하는 의식이었기에 중요하게 여겨졌다. 경종 2년에 조정에서 녹훈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신을 포함시키려 하거나 단훈으로 결정하는 것을 꺼렸던 이유 중 하나는 회맹제와 관련되기도 하였다. 상징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합의되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서얼 출신 공신을 위해 회맹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것이다.

공신 녹훈은 계속 미뤄졌지만 회맹제를 위한 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경종 2년 11월 1일에 한성부로 하여금 각 부를 통솔하고 신무문 밖에 회맹제를 시행할 회맹단을 수축하도록 분부하였다.<sup>50</sup> 한성부에서는 수궁내관(守宮內官)과 함께 경종이 회맹단으로 거동할 때 광화문부터 막차에 이르는 길에 있는 잡목들을 베고 광화문과 신무문의 방축(防築)을 혈기로 하였다.<sup>51</sup> 경종이 출궁과 환궁을 하는 도로는 경신년, 즉 숙종 6년(1680) 보사공신(保社功臣)의 사례에 따라 경복궁 안에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시위(侍衛)하는 것 역시 경신년의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하였다.<sup>52</sup>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유귀의 녹훈 거부로 회맹제가 미루어졌고, 이삼과 신익하 역시 연이어 녹훈을 거부하여 회맹제 길일을 다시 잡아야 했다.

부사공신 회맹제의 준비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왕세제의 참여 여부이다. 노론은 건저(建儲) 문제를 서두르고 왕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요청하여 신임 옥사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왕세제는 위태로

50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1日 壬午.

51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2日 癸未.

52 인조 24년(1646) 병술년에는 국왕의 이동경로를 경복궁 성문 밖으로 통하게 하였고 숙종 6년(1680) 경신년[保社功臣]에는 경복궁 안으로 통하게 하였기에 선례가 두 가지였는데, 이 가운데 경신년의 사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2日 癸未; 景宗 2年 11月 3日 甲申.

운 입장이었다. 게다가 목호룡의 공초 과정에서 왕세제를 언급한 내용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세제는 왕세제의 자리를 사위(辭位)하려고 하고, 조신(朝臣)의 숙배단자(肅拜單子) 봉입(捧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sup>53</sup> 하지만 세제사 조태구와 설서 송인명(1689-1746)이 왕세제를 안심시켜 사위를 막고 숙배를 받도록 하였다. 조태구는 경종에게 불안해하는 왕세제를 안심 시켜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sup>54</sup>

이러한 상황에서 경종 2년 10월에 처음 회맹제를 계획할 당시 경종은 회맹제 절차 가운데 왕세제가 수가(隨駕)하는 절차는 마련하지 말도록 하였다.<sup>55</sup> 이것은 회맹제에 왕세제가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인데, 옥사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목호룡이 왕세제와의 관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차단했던 경종의 태도와 관련지어 본다면 왕세제의 입장을 배려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녹훈문제로 회맹제를 미루게 된 다음 날인 경종 2년 11월 4일, 시강원에서 경종이 회맹제를 친행할 때 왕세제가 수가(隨駕)하겠다고 하령했음을 밝혔고 경종은 이를 윤허하였다. 이에 예조에서는 왕세제가 수가하는 절목을 추가하고, 왕세제의 재실(齋室)을 조성하도록 하였다.<sup>56</sup> 회맹에 왕세자가 참여하는 것은 선례가 있었지만<sup>57</sup>, 영조 4년(1728)의 회맹제에 왕세자가 건강문제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례를 본다면 세자의 참여는 필수 요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sup>5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세제가 노론을 역적

53 『景宗實錄』卷6, 景宗 2年 3月 29日 甲寅。

54 『景宗實錄』卷7, 景宗 2年 4月 9日 癸亥。

55 『承政院日記』546冊, 景宗 2年 10月 27日 己卯。

56 『承政院日記』547冊, 景宗 2年 11月 5日 丙戌; 『會盟祭膳錄』(奎12872), 壬寅 11月 初4日。

57 세조 13년의 회맹제는 왕세자가 주도하였고(『世祖實錄』卷44, 世祖 13年 10月 27日 己未), 인조 6년 9월의 회맹제에는 왕세자가 면복 차림으로 참여하였다(『仁祖實錄』卷19, 仁祖 6年 9月 13日 庚午)。

58 『承政院日記』662冊, 英祖 4年 5月 17日 丁卯; 666冊 英祖 4年 7月 25日 甲戌。

으로 규정하는 회맹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소론이 장악한 정국에 대한 ‘표면적인’ 연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조가 즉위 후 부사공신을 산호하고 자신이 경종 3년의 회맹제에 갔던 것은 오직 경종을 위한 일이었음을 거듭 강조한 것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sup>59</sup>

진 논의를 거쳐 경종 3년 2월 18일에 이르러서야 목호룡을 단훈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회맹제는 3월 12일로 다시 정해졌다. 이미 두 차례나 회맹제를 연기하여 국체가 손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경종은 더 이상 녹훈과 회맹을 변경하지 않으려 하였다. 회맹제를 위해 참여자들은 재계를 해야 했는데, 국왕은 별전(別殿)에서 산재(散齋) 4일, 치재(致齋) 3일[正殿 2일, 享所 1일]을 행해야 했고, 왕세제는 별당(別堂)에서 산재 4일, 치재 3일[正堂 2일, 향소 1일]을 행해야 했다. 이것은 대사(大祀)의 재계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향관과 공신, 집사를 맡은 근시(近侍)들 역시 정침에서 산재 4일, 치재 3일[本司 2일, 향소 1일]을 수행했다. 그 외 배제 백관(陪祭百官)과 위사, 단문을 지키는 수위(守衛)는 각자 본사에서 1일을 청재(淸齋)하도록 했다.<sup>60</sup> 3월 9일부터 승지들은 본원에서 재숙에 들어갔다.<sup>61</sup>

회맹제 거동에 왕세제가 수가할 때 필요한 기마(騎馬)를 수에 맞추어 준비하였고, 대가(大駕)를 따를 인원을 차출하였다.<sup>62</sup> 회맹제 준비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녹훈에 대해 합의되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녹훈을 재고하고 회맹을 미루어야 한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왔다. 지평 이보육(李普昱, 1688?)은 상소를 올려 목호룡이 상변한 일 외에 정찰한 공로는 없었다는

59 『承政院日記』 767冊, 英祖 9年 10月 27日 乙亥; 『英祖實錄』 卷71, 英祖 26年 1月 23日 丁卯.

60 『會盟祭贍錄』(奎12872) 癸卯 2月 初5日; 癸卯 3月 初3日.

61 『承政院日記』 552冊, 景宗 3年 3月 9日 戊子.

62 『承政院日記』 552冊, 景宗 3年 3月 9日 戊子; 景宗 3年 3月 10日 己丑.

점을 지적하고, 모든 옥사를 신문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옥관(獄官)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옥관을 녹훈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선대의 전례가 있었지만 신임옥사의 경우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안옥에 참여한 신하의 녹훈에 대해 대신들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부승지 홍중우(洪重禹, 1661-1726)도 소를 올려 이보우의 소를 따를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경종은 이미 회맹제가 임박했으니 물리지 말도록 비답을 내렸다.<sup>63</sup>

회맹제 당일에 이르러서는 경종이 회맹단으로 행행하려 할 때 대사간 남취명(南就明, 1661-1741)이 청대하였는데, 목호룡을 천예(賤隸)·천수(賤豎)라 칭하며 2품 이상 대신에게 녹훈에 대해 수의하여 감정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남취명은 목호룡이 훈적(勳籍)의 끝에 끼게 하는 것으로도 다행인데, 국구(國舅)와 대신(大臣), 장신(將臣)들이 공을 사양하여 공로가 賤豎[목호룡] 한 사람에게로 돌아갔고, 결국 천승(千乘)의 지존한 군주가 목호룡 한 사람을 상대로 회맹단에서 삽혈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남취명은 대신(臺臣)들이 수의(收議)하자고 했던 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였는데 대신(大臣) 이하가 급하게 회맹제를 진행시키고 승정원에서도 곧바로 이의와 재숙을 청하였으니, 승지를 경책(警責)시키고 회맹제를 미룰 것을 청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도승지 이세최(李世最, 1664-1726)는 녹훈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단훈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미 회맹제의 이의를 진행했고 지금은 법가(法駕)가 출발하려 하는데 어떻게 중지하겠느냐며 남취명과 다투었는데, 남취명은 승지가 대신(臺臣)과 쟁론한 것에 대해 추고하기를 청했다. 하지만 경종은 자신이 보기에도 녹훈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회맹을 또다시 미루지 말도록 하였다.<sup>64</sup>

63 『景宗實錄』卷11, 景宗 3年 3月 10日 己丑; 『承政院日記』552冊, 景宗 3年 3月 10日 己丑.

64 『景宗實錄』卷11, 景宗 3年 3月 11日 庚寅; 『承政院日記』552冊, 景宗 3年 3月 11日 庚寅.

밤 4更에 경종은 경복궁 터의 북쪽에 위치한 회맹단에서 회맹제를 친행하였는데, 『경종실록』에 경종 3년 3월의 회맹제 시행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경종 3년의 회맹제 실행 순서를 대략적으로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1-경종 3년 부사공신 회맹제**

구분	시기	절차
陳設	2일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典設司에서 大次를 壇 밖의 남쪽에다 동쪽으로 가깝게 西向으로 설치</li> <li>- 功臣의 幕次는 동남쪽에다 北向으로 설치하며, 饋慢은 단의 동쪽에 설치</li> </ul>
	1일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按定署에서 版位를 단 아래 한복판에 북향하여 설치</li> <li>- 典儀가 모든 공신 및 陪祭官의 자리를 단의 남쪽에다 북향으로 설치</li> <li>- 典儀·謁者·贊引의 자리를 東階의 서쪽에다 북쪽으로 가깝게 서향하여 설치</li> <li>- 掌牲令이 大牢와 小牢와 盟牲을 끌고 詈所로 갔다.</li> <li>- 典祀官이 宦人을 인솔하고 태祿·소祿를 常儀대로 도살</li> <li>- 盟牲坎은 단의 북쪽 任地에 설치</li> <li>- 血盤案은 단 아래 서쪽에다 설치</li> </ul>
	당일 행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하기 전에 奉常寺의 관원이 올라가서 神位를 壇上에 南向으로 설치</li> <li>- 詈文은 신위의 오른편에 옮겨두고, 香爐와 香盒을 초[燭]와 함께 신위 앞에 설치</li> <li>- 牲匣을 서쪽을 위로 하여 설치</li> </ul>
行禮	당일 행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刻 전에 典祀官이 宦人을 거느리고 盟牲을 잡고 執事官이 篪에 피를 담아 案에 둔다.</li> <li>- 2刻 전에 모든 祭官·陪祭官·執事官이 外位로 나아가서 東西로 나누어 섰다.</li> <li>- 1刻 전에 典儀가 알자·찬인을 인솔하고 들어가서 단의 남쪽 拜位로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본래의 위치로 갔다.</li> <li>- 贊引이 讀贊文官과 집사관을 이끌고 자리로 나아가자, 독서문관 이하가 네 번 절하였다.</li> </ul>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左通禮가 大次로 나아가서 中嚴을 아뢰니, 贊禮가 行事하기를 청하였다.</li> </ul>
	四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이 冕服을 갖추고 나오니, 도승지가 圭를 올렸다.</li> <li>- 찬례가 끓어있어 사배하기를 청하고, 제 위치에 있는 자도 함께 절할 것을 청하였다.</li> </ul>
	盥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례가 다시 인도하여 관세하는 자리에 이르러 북향하여 섰다.</li> <li>- 임금이 규를 꽂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친 뒤 도로 규를 잡았다.</li> <li>- 찬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南階로부터 올라가서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고 섰다.</li> </ul>
	三上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임금이 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였다.</li> <li>- 임금이 세 번 향을 사르고 향로를 신위 앞에 올렸다.</li> </ul>
	奠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이 받아서 奠獻하며 그대로 우부승지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렸다.</li> </ul>
	歃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승지가 血盤을 올리니, 임금이 규를 꽂고 爾血하였다.</li> </ul>

		- 모든 공신도 또한 차례로 삽혈하였다.
讀誓文 四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讀誓文官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끓어있어 誓文을 읽었다.</li> <li>- 임금이 俯伏했다가 四拜하였으며, 저자리에 있는 자들도 모두 절하였다.</li> </ul>
禮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가 끝나니 賛禮가 임금을 인도하여 帷次에 이르러 규를 놓고 면복을 벗었다.</li> <li>- 賛引이 모든 공신과 배제관을 이끌고 차례대로 나갔다.</li> <li>- 독서문관이 서문을 가져다 희생 위에 놓고 구덩이에 묻은 뒤 흙을 채웠다.</li> <li>- 친인이 독서문관 이하 모든 집사를 이끌고 함께 拜位로 가서 사배한 뒤 차례 차례 나갔다.</li> <li>- 典儀가 謁者와 친인을 인솔하고 또 사배한 뒤 나갔다.</li> <li>- 전사관이 饋을 거두고 물러났다.</li> </ul>
還宮	還宮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이 還宮하였다.</li> <li>- 王世弟 또한 隨駕하고 제사에 참여[參祭]하였다.</li> </ul>

회맹제의 절차는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던 절차와 구조적인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sup>65</sup> 이미 조선 초엽부터 시행되었던 조선 특유의 회맹제의 절이 큰 변동 없이 전승되어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회맹제의 실행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실행 2일 전에 전설사에서 대차와 막차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1일 전에 판위와 희생(犧牲)·맹생(盟牲)을 준비하고 맹생감(盟牲坎)과 혈반안(血盤案)을 설치하였다. 실행 당일에는 맹생을 잡고, 국왕이 관세(盥洗), 삼상향(三上香), 전헌(奠獻)을 한 후 국왕과 신구공신들이 삽혈하고 맹서문(盟誓文)을 읽고 맹세하고, 맹생과 맹서문을 맹생감에 묻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회맹제는 1작(一爵)을 올리는 고유제(告由祭)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쓰지 않았다.<sup>66</sup>

회맹제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절차는 국왕의 전헌 이후부터 진행되는 국왕과 공신들이 입가에 피를 바르는 삽혈(歃血) 절차, 독서문관이 서문을

65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신명호(2003b), 앞의 책, 459쪽; 박용만(2012), 위의 책, 288쪽.

66 이러한 내용은 『光海君日記』[中草本] 卷22, 光海 5年 3月 10日 戊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종대의 회맹제를 준비할 때 역시 庚申年の 謄錄을 참고하여 親臨하여 單酌을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었다. 『會盟祭謄錄』(奎12872) 壬寅 11月 初2日.

읽는 절차, 예가 끝난 후 독서문관이 서문을 맹생 위에 놓고 구덩이에 묻는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례의 준비부터 마무리 과정까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맹제 시행 2일 전, 전설사(典設司)에서 경종이 사용할 대차(大次)를 회맹단 밖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깝게 서향하여 설치하고, 공신의 막차(幕次)는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였으며, 찬마(饌慢)은 단의 동쪽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행사 1일 전, 액정서(掖定署)에서 국왕의 판위(版位)를 단 아래 한복판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전의(典儀)가 모든 공신 및 배제관(陪祭官)의 자리를 단의 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였는데, 서쪽을 위로 하였으며 모두 매 등(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마련하였다. 동반·서반의 신구공신 및 적장(嫡長)과 중자(衆子)를 나누지 않고 작차(爵次)로 차례를 삼았으며, 종친(宗親)은 매 품(每品)마다 반열 서쪽에 따로 자리를 설치하였다. 또 전의(典儀)·알자(謁者)·찬인(贊引)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북쪽으로 가깝게 서쪽으로 향하되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하였다.

그리고 장생령(掌牲令)이 태뢰(大牢)·소뢰(小牢)와 맹생을 끌고 서소(誓所)로 갔는데,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인솔하고 태뢰·소뢰를 평상시대로 도살하였다. 맹생은 돼지로 준비하였고<sup>67</sup>, 맹생을 묻을 맹생감은 회맹단의 북쪽에 임의로 구역을 정해서 맹생을 묻기에 충분한 깊이의 사각 형태 구덩이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삽혈에 쓰일 피를 담은 혈반(血盤)을 둘 혈반안은 단 아래 서쪽에 설치했다.

『경종실록』이나 『오례통편』, 『춘관통고』에 따르면 회맹제에는 소·양·돼지를 모두 사용하여 태뢰·소뢰를 준비하였고<sup>68</sup>, 『회맹제등록』의 임인년

<sup>67</sup> 세조 13년의 회맹제에서는 盟牲을 雞와 獐를 썼다고 기록하였는데, 경종 3년에는 돼지만 기록되어 있다. 『世祖實錄』 卷44, 世祖 13年 10月 27日 己未.

<sup>68</sup> 『國朝五禮通編』 卷7, 「吉禮」 會盟祭儀; 『春官通考』 卷63, 「嘉禮」 會盟祭儀.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생서에서 황우(黃牛) 1首·양(羊) 1口·돼지(豬) 1口를 준비하고, 선공감에서 우생(牛牲) 1匣과 대조상(大俎床) 2개, 양생(羊牲)과 시생(豕牲) 각 1匣과 조상(俎床) 1개씩을 준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sup>69</sup> 하지만 이러한 당대의 기록과는 달리 『태상지』에서는 회맹제의 생(牲)은 돼지[豕]를 둘 준비하는데, 그중 하나는 삽혈로 쓰고, 하나는 성(腥)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회맹제에 태뢰·소뢰를 사용했다는 다른 기록과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sup>70</sup> 본 연구에서는 경종대의 상황을 전하는 『경종실록』과 『회맹제등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종 3년의 회맹제에서는 태뢰와 소뢰를 사용했을 것이라 판단하고자 한다.

회맹제 실행 당일, 행사하기 전에 봉상시의 관원이 올라가서 신위(神位)를 단상에 남향으로 설치하였는데, 왕골자리를 깔았다.<sup>71</sup> 서문은 신위의 오른 편에 올려두고, 향로와 향합을 초[燭]와 함께 신위 앞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69 『會盟祭贍錄』(奎12872), 壬寅 10月 29日; 壬寅 11月 初2日.

70 『太常志』會盟祭, 『태상지』에 따르면 牲은 猪 두 마리 준비하는데, 하나는 삽혈, 하나는 牲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외의 祭物로는 果 5色을 준비하고, 酒는 3瓶, 四燭 1丁, 五燭 1丁, 小蠟燭 2柄이 포함되었다. 비록 기록에 따라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회생 이외의 회맹제 제물은 간소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71 회맹제에 사용하는 신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연대기 기록에서 皇天后土, 皇天上帝·社稷·宗廟·山川百神, 天神·地祇에게 고한다는 내용을 통해 대략 告由의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太宗實錄』卷9, 太宗 5年 6月 3日 丁卯; 卷33, 太宗 17年 4月 11日 丁卯; 『世祖實錄』卷23, 世祖 7年 2月 6日 丁丑; 『成宗實錄』卷10, 成宗 2年 4月 6日 戊申; 『仁祖實錄』卷19, 仁祖 6年 9月 13日 庚午; 『肅宗實錄』卷10, 肅宗 6年 8月 30日 丙戌). 선행연구에서는 조선 회맹제의 신위의 성격에 대해 『주례』에서 말하는 명신과 유사한 존재였을 것이라 해석하였다. 『주례』에서 秋官의 司盟이 맹서를 담당했고, 사맹이 北面하여 明神에게 아뢰었는데 명신은 정현의 주를 바탕으로 일월성신을 이르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周禮註疏』秋官 司盟 鄭玄注, 明神, 神之明察者, 謂日月山川也. 그리고 『주례주소』에 신위의 크기와 색에 대하여 사방 4쪽의 크기로 위아래는 흑색과 황색을 칠하고 사방에는 동쪽 청색, 서쪽 흰색, 남쪽 적색, 북쪽 흑색을 칠하여 천지사방의 신을 상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선에서 회맹제에 사용했던 신주 역시 이를 본떴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명호(2003b), 앞의 책, 집문당, 455-456쪽.

생갑(牲匣)을 서쪽을 위로 하여 설치하였는데, 차례대로 소를 먼저 두고, 이어서 양, 돼지를 두었는데 모두 왕골자리를 깔았다. 점(坫)이 있는 작(爵) 하나를 생갑 앞에 두었고, 준(尊)을 단상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작며(勺彝)을 얹었고,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였다. 뢰(罍)는 세의 동쪽에 작(勺)을 얹어 두었다. 비(篚)를 수건[巾]으로 채워서 세의 서남쪽에 두었고 술잔을 씻는 비는 술잔으로 채웠다.<sup>72</sup>

시행 3각 전에 전사관이 재인(率人)을 거느리고 맹생을 도살하였고 집사관이 반(槃)에 피를 담아 혈반안에 두었다. 태뢰와 소뢰에 쓸 희생은 행사 하루 전에 도살하였지만 맹생은 행사 시작 3각 전에 도살하였다. 맹생의 피는 국왕과 공신들이 삽혈하는데 사용하고, 맹생은 행사 이후 서문과 함께 맹생감에 묻기 때문에 당일에 도살하여 부패되지 않은 피와 돼지를 사용해야 했다.

2각 전에 모든 제관은 제복(祭服)을 입고 배제관은 조복(朝服)을 갖추고, 나머지 집사관도 각각 복식을 갖추고는 모두 외위(外位)로 나아가서 동서(東西)로 평상시와 같이 나누어 섰다. 1각 전에 전의가 알자와 찬인을 인솔하고 들어가서 단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 북향하고 네 번 절하고 위치로 돌아갔다. 이어서 찬인이 독서문관(讀誓文官)과 집사관을 이끌고 자리로 나아가면 전의가 ‘사배(四拜)’라 말하고 이어 찬의가 ‘사배’를 외치면[唱], 독서문관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였다. 찬인이 관세하는 위치로 이끌고 나아가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기를 마치고 각각 자리로 나아갔다. 알자와 찬인이 모든 공신 및 배제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면, 집사관이 작세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술잔을 씻고 그 술잔을 다 닦은 뒤에 비 안에 담아서 받들고 중계(中階)로 나아가 준소(樽所)에 두었다.

---

72 경종 3년 회맹제의 제반 준비과정은 조선 초기의 형식과 동일하다. 『端宗實錄』卷9, 端宗 元年 11月 20日 壬申; 『世祖實錄』卷44, 世祖 13年 10月 27日 己未.

전사관이 진찬을 마치면 좌통례가 대차로 나아가서 중엄(中嚴)을 아뢰었고, 찬례가 행사(行事)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찬례는 판서 이조가 맡았다. 경종이 면복을 갖추고 나오자 찬례가 규(圭)를 잡을 것을 청하였고 도승지가 경종에게 규를 올렸다. 이어서 찬례가 경종을 인도하여 판위(版位)에 이르러 북향으로 서면, 전의가 ‘사배’라고 말하였다. 찬례가 끓어앉아 네 번 절하기를 청하였고, 각 위치에 있는 참여자들도 함께 절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먼저 절했던 사람들은 다시 절하지 않았다.

찬례가 다시 경종을 인도하여 관세하는 자리에 북향으로 서면, 찬례가 규를 꽂기를 청하였다. 경종이 규를 꽂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닦고 다시 규를 잡았다. 찬례가 경종을 인도하여 남계로 올라가서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멱(羈)을 들었고, 좌승지가 술을 따랐고 우승지가 술잔을 들어 술을 받았다. 찬례가 경종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서서 홀을 꽂고 끓어앉으면, 각 위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끓어앉았다. 좌승지가 향(香)을 받들고 동부승지가 향로를 받들어 끓어앉아서 올리면, 경종이 세 번 향을 사르고 향로를 신위 앞에 올렸다. 이어서 좌부승지가 작을 올리면 경종이 받아서 전헌하고 그대로 우부승지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도록 하였다.<sup>73</sup>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종의 친림 단작(單酌)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74</sup>

찬례가 경종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 끓어앉으면,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끓어앉았다. 우승지가 혈반을 올리면 경종이 규를 꽂고 삽혈하였고, 모든 공신도 차례로 삽혈하였다. 이때 어전

73 단종 원년의 기록에서는 현작과 상향을 돋는 일을 近侍가 했다고 기록하였는데, 경종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端宗實錄』 卷9, 端宗 元年 11月 20日 壬申.

74 『會盟祭贍錄』(奎12872) 壬寅 11月 初2日.

봉혈관은 승지 박희진(朴熙晉)이 맡았고 왕세제 봉혈관은 송인명이 맡았다. 삽혈이 끝나자 독서문관을 맡은 윤연(尹寔)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끓어앉아 서문을 읽었다.<sup>75</sup> 읽기를 마치고 경종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네 번 절하였다며[俯伏興四拜], 자리에 있는 자들도 모두 절하였다. 삽혈로 피를 바르는 것은 국왕, 새로운 공신, 역대의 공신까지 함께하였다. 이것은 나라에 공로를 세운 공신과 공신가문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었다. 역대조 공신 가문의 적장손까지 대대로 상하신기(上下神祇)에 고하고 삽혈하는 의식에 참여시키는 것은 맹세를 지속적으로 확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된 마음이 변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sup>76</sup>

예가 끝나면[禮畢] 찬례가 경종을 다시 악차(幄次)로 인도하였고 경종은 규를 놓고 면복을 벗었다. 찬인이 모든 공신과 배제관을 이끌고 차례대로 나가면, 독서문관이 서문을 가져다 맹생 위에 놓고 구덩이에 묻은 뒤 흙을 채웠다. 맹서는 맹생 위에 놓고 묻기 때문에 재서(載書)라고도 칭하였다.<sup>77</sup> 찬인이 독서문관 이하 모든 집사를 이끌고 함께 배위로 되돌아가서 네 번 절한 뒤 차례대로 나갔다. 전의가 알자와 찬인을 인솔하고 다시 네 번 절한 뒤 나갔고, 전사관이 친(饌)을 거두고 물러나고 경종이 환궁하였다.

회맹제 의주는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어있지 않았지만 건국 초기부터 시행되었고, 의주 역시 조선 초기에 시행했던 형식대로 거의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영조대 『속오례의』와 『속오례의보』가 편찬될 당시에도 회맹제 의주는 국가전례서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정조대에 『오례통편(五禮通編)』

75 봉혈관, 봉규관, 독서문관의 이름은 경종 3년 6월의 상전 시행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景宗實錄』 卷12, 景宗 3年 6月 21日 戊辰.

76 회맹제에 공신가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다음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太宗實錄』 卷9, 太宗 5年 3月 6日 辛丑.

77 『周禮』에서 맹서문은 사맹이 담당하였는데, 회생을 잡아 피를 취하고 그 회생 위에 書[誓文]을 얹어서 땅에 묻는데, 이것을 輽書하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신명호(2003b), 앞의 책, 457쪽.

이 구상될 때 ‘회맹제의(會盟祭儀)’라는 의주명으로 「길례(吉禮)」의 증보(增補) 의례로 수록되었고, 『춘관통고(春官通考)』에서는 「가례(嘉禮)」에 인조 6년·숙종 6년·영조 4년의 회맹제 시행 사례와 의주가 수록되었다. 대략의 의식 준비와 행례과정은 앞서 서술한 경종 3년의 회맹제와 대부분 일치한다.<sup>78</sup>

경종 3년 부사공신 회맹제 당시, 왕세제도 수가하고 제사에 참여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경종실록』의 행례 기록에서는 왕세제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왕세제 판위의 설치나 헌작, 배례 등의 절차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말미에 ‘王世弟亦隨駕參祭’라 기록하여, 왕세제가 수가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했었다는[參祭] 사실을 밝혔다.<sup>79</sup> 비록 구체적인 왕세제의 행례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회맹제 이후 논상하는 과정에서 왕세제 봉규관 필선 유만중(柳萬重), 봉혈관 송인명이 언급되었던 사실을 통해 왕세제가 회맹제에 참여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sup>80</sup> 뿐만 아니라 왕세제가 영조로 즉위한 이후 당시의 일을 술회하는 내용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영조 9년(1733), 영조는 자신이 왕세제였을 당시 ‘匙’로 삽혈하였던 사실을[以匙歃血] 언급한 바 있다.<sup>81</sup> 영조는 자신이 당시 회맹제 자리에 있었던

78 『國朝五禮通編』卷7, 「吉禮」會盟祭儀[增]; 『春官通考』卷63, 「嘉禮」宴禮, 會盟宴[附會盟祭], 會盟祭儀[今儀]. 회맹제 길일을 추택하는 ‘時日’과 제례 전 ‘齊戒’에 대해서는 序例를 참고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설정절차는 陳設→行禮→還宮으로 구분지었다.

79 『景宗實錄』卷11, 景宗 3年 3月 11日 庚寅. 부사공신은 영조 즉위 후 僞勳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기록물은 대부분 영조대에 삭제되었는데, 『경종실록』의 행례기록 역시 영조대에 『경종실록』을 편찬할 당시 고의적으로 왕세제와 관련된 행례 사항들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80 『景宗實錄』卷12, 景宗 3年 6月 21日 戊辰.

81 『承政院日記』767冊, 英祖 9年 10月 27日 乙亥; 『英祖實錄』卷36, 英祖 9年 10月 27日 乙亥. ‘以匙歃血’에서의 ‘匙’는 글자 그대로 숟가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會盟祭瞻錄』壬寅 10月 29일의 기록을 바탕으로 삽혈용 피를 담는 은쟁반[歃血銀錠]

사실에 대해서, ‘회맹제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종을 따라서 간 것’이라고 술회하였다.<sup>82</sup> 자신이 분명 경종 3년의 회맹에 참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 이유가 ‘회맹제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노론을 역적으로 규정하는 회맹제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조 26년(1750) 승지 박필재(朴弼載)에게 목호룡에 대해 물었는데, 박필재는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며, 목호룡이 녹훈되고 봉군(封君)되었던 일에 대해 말했다. 이에 대해 영조는 회맹제에 참석했던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회맹제 때에 내가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내가 간 것은 뜻한 바가 있어서였다. 감로(甘露)·참석(斬石)의 뜻이었다. 고 좌상[송인명]이 괴를 받아 가지고 오다가 내가 잔[酒盃]을 든 것을 보고 놀라는 빛이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상을 모시고 회맹에 나왔는데 어찌 잔을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予陪聖上而來盟, 安得不舉盃乎?]’라고 하였는데, 고 좌상의 놀림은 참으로 뜻이 있는 일이었다.

이렇듯 영조는 자신이 회맹제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뜻한 바가 있어 그 자리에 나아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왕세제 봉혈관이었던 송인명은 혈반을 가지고 오다가 충의를 다지는 삽혈의식에 참여하기

---

盤] 1개, 자기접시[磁帖匙] 30개를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壬寅 11月 初2日의 기록에서 전하[경종]의 삽혈에 사용할 자기접시[殿下歛血時所用磁帖匙] 1立과 碑儀에 사용할 자기접시 5立에 대해 거론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교차 대조해 본다면,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의 ‘匙’는 순가락이 아니라 삽혈에 소용되는 자기접시[磁帖匙]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會盟祭贊錄』(奎12872), 壬寅 10月 29日; 壬寅 11月 初2日.

82 『承政院日記』 767冊, 英祖 9年 10月 27日 乙亥; 『英祖實錄』 卷36, 英祖 9年 10月 27日 乙亥. “會盟祭時, 卿不爲奉血乎? 予則以匙歛血, 非參於會盟也, 乃隨景廟而往, 卿猶不知予心矣.”

위해 잔을 잡고 있는 왕세제를 보고 놀라는 얼굴을 보였고<sup>83</sup>, 영조는 경종을 모시고 회맹에 나왔기에 잔을 들었다고 말했다.<sup>84</sup> 이처럼 영조는 자신이 경종 3년의 회맹제에 자신이 참여한 것은 오로지 경종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왕세제의 회맹제 참여는 왕위 후계자로서 경종에 대한 충심은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 정국을 장악한 소론에 대한 ‘표면적인’ 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sup>85</sup> 경종의 배려로 충분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론의 사사, 소론의 득세라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존해야 했던 왕세제는 회맹제에 나아감으로써 경종을 중심으로 한 조정에 대해 균열을 일으킬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듯 왕세제까지 참여한 가운데 부사공신 회맹제가 마무리되었고, 녹훈도감에서는 목호룡을 단록(單錄) 3등으로 하고 훈호는 6글자로 할 것을 계품하여 경종의 허락을 얻었다. 앞서 1·2·3등 공신을 염두에 두고 훈호를 ‘輸忠奮義竭誠效力扶社’의 10글자로 정했는데, 여기에서 ‘竭誠效力’ 4글자를 감해 ‘輸忠奮義扶社’ 6글자만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sup>86</sup> 경종은 인정전에

83 『英祖實錄』 卷71, 英祖 26年 1月 23日 丁卯. 『영조실록』의 史臣은 송인명이 당시 잔을 들고 있는 왕세제를 보고 놀라워한 것은 거짓이고, 후일을 위한 계략이었다고 적고 있다.

84 회맹제는 친립 單酌의 형식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경종 이외에는 獻爵을 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여기서 왕세제가 들었던 잔은 현작을 위한 술잔이라기보다는 삽월에 쓰인 자기접시를 표현했을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다.

85 선행 연구에서는 불안한 입장의 왕세제를 조태구와 송인명이 위안하였고, 왕세제가 이들을 따랐던 사실을 통해 왕세제가 당시 세력을 장악하게 되었던 소론 측과 연결을 맺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종 2년 4월에 이르러 소론의 정국주도가 굳어진 가운데 왕세제로서는 소론측과의 관계를 완만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경종과 소론 측에서도 왕세제를 안정시키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론과 왕세제의 연결이 있었다고 정리하였다. 홍순민, 『영조, 임금이 되기까지』(눌와, 2017), 195-196쪽.

86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3月 12日 辛卯.

임어하여 노부(鹵簿)와 고취(鼓吹)를 벌여두고 목호룡에게 공신교서를 내렸다.<sup>87</sup>

우부승지 박희진이 계를 올려 외방에서 상경한 공신적장들이 오랫동안 수도에 머무르면서 식량이 동났을 테니 선례에 따라 양자(糧資)를 지급해주도록 청하였고 경종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sup>88</sup> 그리고 70세 이상이거나 병든 사람 외에 회맹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문하는 일에 대해서도 논의되었고<sup>89</sup>, 선례에 따라 폐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맹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맹록의 말단에 기록하고 불참한 사유를 기록하기로 하였다.<sup>90</sup> 이 외에도 전례에 따라 신구 공신적장들에게는 표리(表裏)를 내려 주고<sup>91</sup>, 회맹제에 진참(進參)한 총 58명의 공신적장에게 상격을 내려주었다는 별단을 확인할 수 있다.<sup>92</sup>

87 『景宗實錄』卷11, 景宗 3年 3月 13日 壬辰.

88 『承政院日記』552冊, 景宗 3年 3月 13日 壬辰.

89 『承政院日記』552冊, 景宗 3年 3月 21日 庚子; 景宗 3年 3月 22日 辛丑.

90 『承政院日記』552冊, 景宗 3年 3月 25日 甲辰; 553冊, 景宗 3年 4月 2日 辛亥. 현전하는 회맹축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분석은 다음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박성호 (2017), 앞의 책.

91 『六典條例』에 따르면 신구 공신적장에게 내려주었던 表裏는 水紬 혹은 木綿였다. 『六典條例』卷1, 吏典 忠勳府 會盟. 경종 3년 4월 12일에 呂必容이 표리를 賦給해야 한다고 집계했던 공신차순의 元數는 189~190명이었다. 『承政院日記』553冊, 景宗 3年 4月 12日 辛酉.

지역	京居	京畿	江原道	忠清道	黃海道	全羅道	慶尚道	平安道	총계(*)
수	63	80	8	23	6	6	3	1	190

\*呂必容은 인원이 총 189명이라고 보고했지만, 지역별로 나열한 수를 총합하면 190명으로 집계된다. 아마 당시 합계 혹은 인원집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92 『昭代雜錄日記(坤)』(古4206, 규장각 소장), 會盟祭進參人員功臣嫡長賞格別單 [壬寅 11月初9日] 金重剛, 許增, 南泰徵, 申弼夏, 趙復命, 張震爍, 李時遇, 李世胄, 韓圭星, 洪應夢, 魚史彬, 具聖弼, 崔潮, 金可敎, 洪禹宗, 吳萬復, 車鶴周, 金聖履, 崔弘相, 李昌遠, 辛裕, 洪舜元, 朴廷元, 申瀆, 權壽麟, 李思弼, 李樟, 韓珪, 權最, 李衡東, 南蓋華, 金東禧, 沈玩, 李齊白, 張拱辰, 柳儀, 元景濂, 楠建基, 趙持重, 韓世, 沈義祖, 沈明哲, 崔弘輔, 南正夏, 韓世貞, 魚就源, 柳述, 柳應瑞, 沈宗賢, 具赫, 黃綜, 權學, 申懲, 申德夏, 李鼎和, 咸陵君, 申聖夏, 尹淵. (\*기록된 그대로 작성하였다.)

회맹제와 교서반강에 이어 회맹연( 혹은 餘福宴)이 진행되었는데, 경종 2년 회맹제를 계획할 당시부터 흥황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선례에 따라 권정(權停)으로 행하도록 정하였다.<sup>93</sup> 그리고 회맹제에 참석한 신구공신들을 전정(殿庭)으로 모아서 제사 후 남은 고기와 술을 나누어주기로[祭餘酒肉分餉] 계획한 바에 따라<sup>94</sup> 경종은 승지들을 보내어 맹제의 준여(餽飴)를 인정전(仁政殿)의 뜰에서 공신들에게 내려주었다.<sup>95</sup>

경종 3년 6월에 이르러 회맹제에서 행례했던 사람들에 대해 상전을 내렸다. 찬례였던 판서 이조, 봉혈관이었던 승지 박희진, 독서문관이었던 윤연, 왕세제 봉규관이었던 필선 유만중, 왕세제 봉혈관이었던 송인명을 모두 가자(加資)하고 나머지는 각각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sup>96</sup> 원래 어전과 왕세제, 공신에 대한 봉혈관을 맡았던 사람들은 모두 가자하려 했으나, 이조판서 유봉휘가 일시에 25명이 승서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니 어전 봉혈관만 승서(陞敍)하고 여러 공신 봉혈관은 말[馬]을 하사하는 데 그쳤던 경신년 회맹의 선례를 참고하라는 상소를 올렸다.<sup>97</sup> 이에 따라 국왕과 왕세제의 봉혈관을 맡았던 사람들만 승서하고 나머지는 말을 지급하였다.<sup>98</sup>

이처럼 국왕을 위해하려했던 모역을 평정하고 공신들과 더불어 충의를 맹세하는 의식의 중심에 경종이 있었고, 노론의 역모를 고변한 공로자로 목호룡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왕세제가 참여했던 것은 경종에 대한

93 『承政院日記』 546冊, 景宗 2年 10月 29日 辛巳, 숙종 6년(1680)에 경비가 고갈되어서 회맹연을 임시로 정지하였는데, 당시 舊功臣의 嫡長이 모두 연회에 참여할 것을 감안해 계산했던 경비가 10,000兩이었다. 『肅宗實錄』 卷10, 肅宗 6年 8月 3日 己未.

94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3日 甲申; 『會盟祭賸錄』(奎12872), 癸卯 2月 初2日.

95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3月 13日 壬辰. 이를 『승정원일기』에서는 會盟宴, 『경종실록』에서는 餘福宴이라 표현하였다.

96 『景宗實錄』 卷12, 景宗 3年 6月 21日 戊辰.

97 『承政院日記』 556冊, 景宗 3年 7月 22日 己亥.

98 『承政院日記』 557冊, 景宗 3年 8月 4日 辛亥.

충의는 물론 정국을 장악한 소론세력과의 표면적 공조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사공신의 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듬해에 경종이 재위 4년만에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게 된 후 정국의 상황은 다시금 급변하였다. 소론에 의해 배제되어 있었던 노론이 조정에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소론 측에 보복을 가하고 정치적 명분을 되찾기 위해 움직였던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 영조 역시 노론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론의 입장은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sup>99</sup> 영조 즉위 년(1724) 12월, 신임옥사를 주도하고 공신 녹훈에 있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김일경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였다.<sup>100</sup> 그리고 유일한 공신으로 녹훈되었던 목호룡은 김일경과 함께 당고개에서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 되었는데<sup>101</sup>, 영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목호룡의 음흉한 정상을 팔방에 알리지 않을 수 없다며, 목호룡의 수급(首級)을 서소문 밖에 내걸고 사지를 따로 잘라서 사흘 후 머리와 수족을 팔로(八路)에 돌려 전시하였다.<sup>102</sup> 이후 영조는 신임옥사를 무옥으로 판정하고<sup>103</sup> 부사공신의 훈적 역시 위훈(僞勳)으로 간주하고 삭거(削去)하였다.<sup>104</sup>

반면에, 경종대에 공신으로 추천되었던 어유귀와 이삼, 신익하는 부사공신이 되기를 거부했기에 영조 즉위 후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영조가 즉위한 후 조정에서 어유귀가 왕세제를 세울 때 불만을 품었고 목호룡과

99 이에 대해서는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진단학보』 제56집(1983); 허태용, 『景宗實錄』을 통해서 본 少論의 정치 義理 검토, 『민족문화연구』 제60집(2013); 이근호(2016), 앞의 책.

100 『英祖實錄』 卷2, 英祖 卽位年 12月 4日 癸酉.

101 『英祖實錄』 卷2, 英祖 卽位年 12月 8日 丁丑.

102 『英祖實錄』 卷2, 英祖 卽位年 12月 10日 己卯.

103 『英祖實錄』 卷4, 英祖 元年 3月 25日 癸亥.

104 『英祖實錄』 卷7, 英祖 元年 8月 11日 丙子. 영조가 즉위 이후 임인옥사를 번복하고 노론을 신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태용(2013), 앞의 논문, 288-289쪽.

내통한 혐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sup>105</sup> 영조는 그를 국구로서 예우하였다. 이삼과 신익하는 옥사 당시 수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은자와 검을 찾았고 약에 대한 정황을 밝혔다는 점에서 신임옥사와 연루된 상황이었다. 영조 즉위년에 신임옥사 관련자들을 나국할 때 영조가 정상을 참작해서 이삼을 영남에 유배시켰다. 그리고 영조 3년에 이삼은 자신이 신축년과 임인년에 수색을 담당했던 일에 대해 변론하였는데 영조는 이삼이 무함당한 일을 알고 있다고 위유하였다.<sup>106</sup> 이삼은 영조 4년에 무신난을 평정하는데 관여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분무(奮武) 2등 공신으로 녹훈되었다.<sup>107</sup> 신익하는 영조가 즉위하기 전 경종 3년에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영조대에 편찬된 『경종실록』에 수록된 신익하의 졸기에 ‘사람됨이 단정하였고 관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여 법도를 지켰다. 군심(軍心)을 깊이 얻어 무장(武將) 가운데 비교할 만한 사람이 드물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겁게 의지하였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보아 영조대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8</sup>

정리하자면, 부사공신 회맹제는 3등 공신 한 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독특한 사례였고, 회맹제의 시행 과정을 통해 당시 정국에서 경종과 왕세제가 처해있는 입장과 관계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왕세제의 회맹제 참여는 소론 중심의 정국에 대한 표면적 연대의지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영조는 즉위 후 부사공신을 삽훈하고 김일경·목호룡을 처단하였고 자신이 회맹제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는 노론파의 단절 혹은 소론파의 진정한 공조가 아닌 경종에 대한 충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며 스스로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105 『英祖實錄』 卷5, 英祖 元年 4月 29日 丙申。

106 『英祖實錄』 卷12, 英祖 3年 8月 7日 庚寅。

107 『英祖實錄』 卷17, 英祖 4年 4月 29日 己酉。

108 『景宗實錄』 卷12, 景宗 3年 4月 17日 丙寅。

## IV. 맷음말

---

공신회맹제는 국가와 왕실을 위협했던 세력을 토역하고 왕실에 대한 충의를 맹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경종 3년에 시행되었던 부사공신 회맹제는 경종, 왕세제, 그리고 3등 공신 목호룡의 참여 양상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신임옥사의 처리과정이 명백하지 않았고, 모역을 고변했던 목호룡 외에는 녹훈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공신을 녹훈하기까지 긴 논의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국왕이 원훈을 정해야 원훈과 대신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공신들을 감훈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종은 중심을 잡지 못했다. 유일하게 공신이 될 수 있었던 목호룡은 남인 서얼출신이었던 데다가 3등 공신으로 녹훈될 정도의 공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국옥과정을 재검토하여 1등과 2등 공신을 감훈하고자 했다. 하지만 목호룡을 통해 삼수의 역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는 이유로 공신후보로 선정되었던 어유귀나, 삼수에 관한 증거를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추천되었던 이삼, 신익하는 녹훈되기를 거부하였다.

특히 김일경과 일정한 입장을 같이 했던 것으로 알려진 어유귀의 녹훈 거부는 주목할 만하다. 공신이 되기를 거부했던 표면적 이유는 선대 공신 책록의 법례와 맞지 않음에도 구차하게 선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신이 된다는 것은 해당사건에 대한 공식적 상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때문에 공신녹훈과 회맹제 논의과정을 통해 준소·급소 계열의 입장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어유귀와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경종 3년의 부사공신 회맹제는 3등 공신 목호룡 한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참여자들이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징행위로 대체된 형태의 의사표현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노론과 결부되어 있었던 왕세제가 참여하였는데, 이는 소론 중심의 정국에 대한 왕세제의 ‘표면적인’ 연대의지를 상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종에 대한 우애와 충의를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에 경종이 재위 4년만에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게 된 후 정국의 상황은 다시금 급변하였다. 영조 즉위후 노론이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소론 측에 보복을 가하고 정치적 명분을 되찾기 위해 움직였다. 영조는 김일경과 목호룡을 당고개에서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하였고, 부사공신의 훈적 역시 삭거하였다. 반면에 부사공신으로 녹훈되기를 거부했던 어유귀는 영조대 정국에서도 국구로 예우받을 수 있었고, 이삼은 영조 4년 무신난의 토역에 공을 세워 분무 2등 공신으로 녹훈되었다. 그리고 영조는 자신이 경종을 따라 회맹제에 참여한 것은 오직 경종을 위하는 뜻이었음을 누차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世祖實錄》, 《光海君日記》, 《景宗實錄》, 《景宗修正實錄》, 《承政院日記》, 《六典條例》, 《國朝五禮儀》, 《五禮通編》, 《春官通考》, 《太常志》, 《昭代雜錄日記(坤)》, 《會盟祭贍錄》.

### 2. 단행본

박성호,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의 옛 맹약을 지키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2003a.  
이근호,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 민속원, 2016.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최승희, 『朝鮮後期 社會身分史研究』. 지식산업사,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전 도록: 조선의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홍순민, 『영조, 임금이 되기까지』. 놀와, 2017.

### 3. 논문

강순애, 「조선 태종조 佐命功臣의 책봉 교서와 관련 문서의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제80집, 2019, 113-140쪽.  
김명화, 「조선후기 忠勤府의 功臣子孫 파악과 收單: 『忠勤府贍錄』과 功臣子孫世系單子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제56집, 2020, 81-117쪽.  
김윤주, 「조선 초 공신 책봉과 개국·정사·좌명공신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학보』 제35집, 2009, 1-38쪽.  
노인환, 「조선시대 功臣敎書 연구」. 『古文書研究』 제39집, 2011, 1-34쪽.  
박성호,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의의 검토」. 『전북사학』 제36집, 2010, 63-86쪽.  
박천식, 「朝鮮開國功臣에 對한 一考察: 冊封過程과 待遇를 中心으로」. 『전북사학』 제1집, 1977, 167-199쪽.  
\_\_\_\_\_, 「戊辰回軍功臣의 冊封顛末과 그 性格」. 『전북사학』 제3집, 1979, 65-124쪽.  
신명호, 「조선시대 공신회맹제」.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b, 451-469쪽.  
신윤호, 「太平會盟圖의 역사적 배경」. 『미술자료』 제80집, 2014, 79-95쪽.

- 오갑균, 「景宗朝에 있어서의 老少 對立」. 『淸州教育大學校論文集』 제8집, 1972.
- 이희환, 「경종대의 신축한국과 임인옥사」. 『전북사학』 제15집, 1992, 163~205쪽.
- 전종섭, 「조선 성종조 좌리공신에 관한 일고찰」. 『대구사학』 제18집, 1980, 33~76쪽.
- 정궁식, 「조선전기 공신지위의 승계: 칩자를 중심으로」. 『법학』 제43(2)집, 2002, 260~287쪽.
- 정두희, 「朝鮮初期 三功臣研究: 그 社會의 背景과 政治的 役割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75·76집, 1977, 121~176쪽.
- 정만조,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蕡平派의 活動」. 『진단학보』 제56집, 1983, 27~66쪽.
- 정승모, 「會盟誓文: 조선 태종 4년(1404) 11월 功臣會盟祭 때 작성한 誓文의 板刻本」. 『역사민속학』 제3집, 1993, 238~247쪽.
- 허태용, 「『景宗實錄』을 통해서 본 少論의 정치 義理 검토」. 『민족문화연구』 제60집, 2013, 281~321쪽.

## 국문초록

조선의 공신회맹제는 국가와 왕실을 위협했던 세력을 토역하고, 입가에 피를 바르면서 왕실에 대한 충의를 맹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복궁 북쪽의 회맹단에서 시행되었다. 경종 3년의 부사공신 회맹제는 신임옥사로 인해 시행되었는데, 당시 신임옥사의 처리과정이 명백하지 않았고 모역을 고변했던 목호룡 외에는 녹훈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공신을 녹훈하기까지 오랜 논의를 거쳐야 했다. 김일경이 어유귀를 원훈(元勳)으로 추천하였지만 어유귀가 극구 사양하면서 무산되었고, 공신으로 추천되었던 이삼과 신익하 역시 공신이 되기를 거부하였다. 결국 목호룡을 3등 공신으로 ‘단훈(單勳)’하고 회맹제를 시행하였는데, 경종, 왕세제, 3등 공신 목호룡이 회맹제에 참여했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정국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노론과 결부되어 있던 왕세제가 참여하였는데, 이는 소론 중심의 정국에 대한 왕세제의 ‘표면적인’ 연대의지를 상징하였던 것이다. 영조가 즉위 이후 자신이 당시 회맹제에 참여한 것은 오직 경종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던 측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 2021. 3. 17.

심사일 2021. 5. 10.

제재 확정일 2021. 5. 20.

주제어(keyword) 신임옥사(Sinim-Oksa), 회맹제(Pledge Ritual), 부사공신(Busa Meritorious Subject), 경종(King Gyeongjong), 영조(King Yeongjo), 목호룡(Mok Ho-Ryong), 김일경(Kim Il-Kyung), 어유귀(Eo Yu-gwi)

## Abstract

The Conferment of Busa Meritorious Subject(扶社功臣) and Pledge with Sacrificial Ritual(會盟祭) after the Sinim-Oksa(辛壬獄事)  
Shin, Jean-Hae

When it comes to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功臣會盟祭) of Joseon dynasty, it was held in the Hoemengdan(會盟壇), north of Gyeongbokgung Palace, to pledge allegiance to the royal family while applying blood on the lips. The Pledge ritual in 1723 was practiced due to the Sinim-Oksa(辛壬獄事) case. At that time, the investigation of Sinim-Oksa was not clear and there was no one worthy of distinguished contribution except Mok Ho-Ryong(睦虎龍), who accused the conspiracy, so it had to be discussed for a long time before he was able to do so. Kim Il-kyung(金一鏡) recommended Eo Yu-gwi(魚有龜) as a main=meritorious subject(元勳), however, it was canceled when Eo Yu-gwi refused to become the subject, and Lee Sam(李森) and Shin Ik-ha(申翊夏), who were also recommended as meritorious subjects, refused to become meritorious subjects. In the end, Mok was appointed as the only meritorious subject, the third-class, and the Pledge ritual was performed. The political atmosphere was confirmed by the appearance of King Gyeongjong, Crown Prince(王世弟, King's brother), and third-class meritorious subject Mok participating in the Pledge ritual(會盟祭). At this time, the Crown Prince, who was related to the Noron faction(老論), participated, not only symbolizing the crown prince's "superficial" solidarity with the Soron faction(少論), but also showed his brotherly affection and loyalty to King Gyeongjong. This can also be confirmed in terms of King Yeongjo's emphasis that it was only for the sake of King Gyeongjong at that time that he participated in the Pledge ritual.